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I 개요

1. 목적

- 가. 학생에게 전공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함
 나. 실습기관에 전공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제공하여 대학과의 산학협력 관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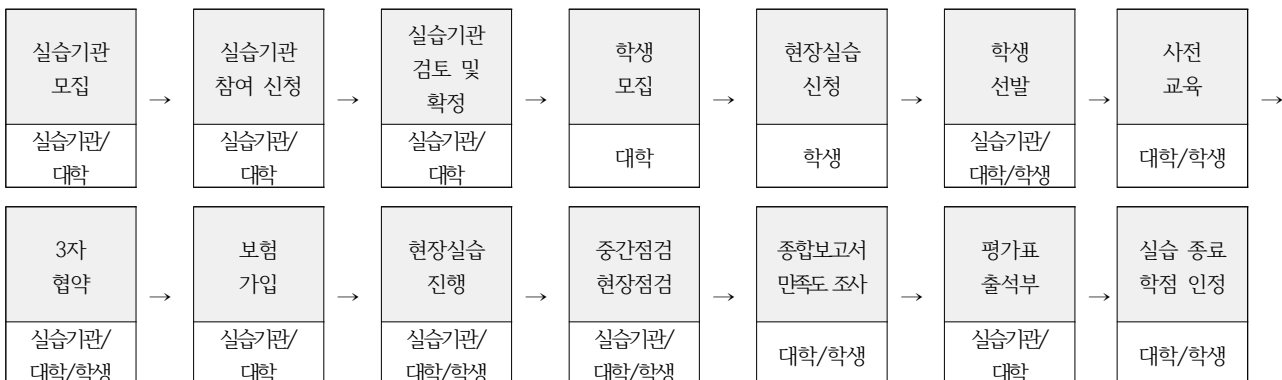
2. 운영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실습기관 모집	2026. 6.22.(월) ~ 7.17.(금)	. 프로그램 안내자료 발송 및 접수
실습기관 검토 및 확정	~ 7.17.(금)	. 자격요건 검토 및 확정
학생 모집	6.29.(월) ~ 7.24.(금) 13:00	. 실습기관 공지 . 학생 모집 안내
학생 선발 완료	~ 8. 7.(금) 13:00	.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
현장실습학기제 준비	8.10.(월) ~ 8.31.(월)	. 사전 안내 교육(일정 별도 안내) . 3자 협약(대학↔학생↔실습기관) 체결 . 상해보험 가입(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9. 1.(화) ~ 12.31.(목)	. 실습기관 현장점검 . 운영 중간점검서 및 종합보고서 등 서류 작성 . 학점 인정(15학점)
실습지원비(대학) 지급	실습 종료 이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급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지급

※ 위 일정은 대학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안내 교육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3. 운영 단계



4.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기준

- 가. 현장실습학기제는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로, 장소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학기제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나.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 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하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 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인 경우로 하며,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실습 기간 및 시간

- 가. 실습 기간: 2026. 9. 1.(화) ~ 12.31.(목) ※ 총 4개월
- 나. 실습 시간
 - 1)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 5일 운영
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함
 - 2)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함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
 -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은 운영할 수 없음.
단,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실습기관 점검

- 가. 신규 참여 실습기관은 사전 서면점검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나.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의 경우 실습기관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시행함
- 다. 신규 참여 실습기관,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습기관은 현장점검을 시행함

7. 보험 가입

- 가. 상해보험(학교)과 산재보험(실습기관)은 실습 시작일 이전 필수로 가입해야 함
- 나.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증명서를 실습 시작 후 1주일 내 학교로 제출해야 함

8.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나.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 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시행
- 다. 기계작동 및 실험 기반 실습 등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함

- 라. 공휴일, 휴일(추가적 유급휴일 포함)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해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시행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함
- 마. 재난 상황 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 기간(또는 일수)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 1) 재택실습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 일수로 인정함
 - 2)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함

9. 3자 협약

- 가.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3자 협약을 체결함
- 나. 대학의 대학일자리본부장 ↔ 실습기관의 대표자 ↔ 학생 간 체결
- 다. 진행 절차

1	협약서 초안 작성 및 상호 확인	· 3자 확인 후 내용 확정 · 확인 방법: 온라인(e-mail) 진행
↓		
2	대학 및 학생 협약서 날인 후 실습기관 송부	· 송부 방법: 온라인(e-mail) 송부
↓		
3	실습기관 직인 날인 후 2부(대학, 학생) 회신	· 대학-학생-실습기관 각 1부 보관

10. 실습지원비 지급

- 가. 산학협력법 제11조의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나.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 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 1)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실습기관 실습지원비 + 학교 실습지원비)을 선지급하고, 학교는 학교 실습지원비(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실습시간 × 25%)를 실습 정상 종료 후 2개월 내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대학 실습지원금 예시

구분	교육 비율	실습 비율	실습지원비(대학)	비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25%	75%	1,981,440원 (16주)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6주간 실습한 금액의 25%인 1,981,440원을 실습기관에 지급
			2,156,880원 (4개월)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개월간 실습한 금액의 25%인 2,156,880원을 실습기관에 지급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 1)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습비율의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는 학교 실습지원비(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실습시간 × 25%)를 실습 정상 종료 후 2개월 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대학 실습지원비 예시

구분	16주	4개월	비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1,981,440원	2,156,880원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습한 금액의 25%를 학생에게 지급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마.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3) 직무수행 실습 시간: (전체 실습 시간-교육 시간)

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소득세 과세 여부 안내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7조에 따라 지급받은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기타 사항: 위 프로그램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5-36호, 2025. 12. 22. 시행)에 따라 진행함.

Ⅱ 실습기관

1. 자격 및 요건

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관

다. 실습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실습기관)」 근거

- 1)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2)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3) 현장실습 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5)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 및 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할 현장 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것
- 6) 그 밖에 이 고시를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 것

라. 실습기관은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1) 실습기관은 실습생(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시간을 배정해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 2) 교육 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함
- 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의 비율이 10/100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배정해 운영해야 하고,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 비율을 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4)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 5) 세부 교육 내용은 붙임의 실습기관 운영계획서에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2. 불인정 기준

- 1)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및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사업
-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관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3)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4) 현장실습 학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가) 소비, 향락,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공급 등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 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한 사업체
 - 다) 다단계 판매업체
 - 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습 기관

3. 신청 서류

순번	구분	대상
1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전체 기관
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3	기업 사업자등록증	신규 기관

※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smuseoulintern@gmail.com)

4. 참여 혜택

구분	세부 내용
우수 인재 확보	· 참여 대상: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이 있는 3~4학년 재학생
대학 실습지원비 지급(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선지급한 경우, 실습 정상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기간에 최저임금의 25% 환급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 당 1마일리지 적립

Ⅲ 학생

1. 지원 자격

가.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3~4학년 재학생(학적 기준)

※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4학년 2학기 재학생, 학기-방학 연계 실습 참여 제한

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이 가능한 재학생

다.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을 갖춘 재학생

※ 초과학기생/휴학생/유예생/수료생 참여 제한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 참여 제한

※ 학생이 실습기관을 직접 모집하거나 선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2. 학점 인정

가. 학점 인정 사항

구분	내용	비고
학점 인정	15학점	· 학기제 및 계절제 연계시 최대 18학점 인정 · 실습직무는 전공과의 적합성을 갖추어야 함 · 중도 포기 시 학점 미인정
학점 인정 전공	전공선택 또는 융합선택	· 다전공자는 제1·2·3전공 또는 융합전공만 신청 가능 · 그 외 전공(심화, 연계 전공 등)은 인정 제한
교과목명	현장실습학기제(전공명)	· 실습 종료 후 주관 부서에서 학사운영팀에 학점 인정 요청

나. 세부 내용

1) 실습 종료 후 평가표, 출석부, 운영 중간점검서, 종합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인정함

※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으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2) 학점 인정은 실습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공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확인

3) 성적은 P(급제)/F(낙제)로 부여되며, 학점 수는 반영되나 평점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음

4)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다)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중도 포기자 성적 처리

가) 실습생 본인의 귀책사유(결근, 지각 등)에 의한 중도 포기: F 처리

나) 실습기관의 부당한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습기관 재배치를 통한 실습 지속

다. 수강 신청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현장실습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수강 계획 과목 신청

2) 수강정정 기간(선발 확정 시)

가) 학생: 기존 신청한 교과목 취소

나) 주관 부서: 정정기간 종료 후 학사운영팀에 요청하여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삽입

3) 실습시간과 중복되는 대면 교과목은 수강이 불가함.

단) 실습 종료 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 예시: 대면 수업 시간이 19시인 경우, 실습기관과 대학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수강 제한

4) 사이버 녹화 강의: 실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수강 가능

3. 참여 단과대학 및 전공 현황

단과대학	전공명
인문사회과학대학	·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전공, 지적재산권전공, 문헌정보학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
	· 공간환경학부, 행정학부, 가족복지학과, 국가안보학과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경영경제대학	·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융합공과대학	· 지능-데이터융합학부: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핀테크전공·빅데이터융합전공·스마트생산전공
	· SW융합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지능IoT융합전공, 게임전공, 애니메이션전공
	·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전공, 화학에너지공학전공, 화공신소재전공
문화예술대학	· 외식의류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의류학전공
	· 스포츠무용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무용예술전공
	· 미술학부: 조형예술전공, 생활예술전공
	· 음악학부

※ 단과대학 및 전공 설명자료: <https://www.smu.ac.kr/kor/edu/seoul01.do>

4.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대처 방법

가. 실습기관 또는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실습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에 통보하고 실습기관과 학생, 학교의 동의하에 협약과 운영계획서 등을 변경하여야 함

나.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로 연락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는 학생 및 실습기관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라. 준수 사항

- 1) 실습기관의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2) 사전 직무교육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불참 시 실습 참여를 제한함
- 3) 사전 안내된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4) 실습에 관한 서류는 지정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5) 실습 중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6) 최종 선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습을 취소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및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7) 실습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였더라도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IV 프로그램 신청

1. 모집 과정

1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실습기관 정보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확인 ·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전공만 지원 가능
↓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 제출 방법: e-포트폴리오 제출 · 제출 자료: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3	학생 선발	·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 · 최종 선발

2. 지원 사항

가. 서류 및 면접 상담 지원

- 1) 목적: 학생의 서류 작성 역량 및 면접 경쟁력 강화
- 2) 신청 방법: [e-포트폴리오]-[상담신청]-[컨설턴트 상담] 선택 후,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서류 첨부
※ 대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

3. 참여 혜택

- 가. 전공 분야 실무 경험 강화
- 나. 현장실습학기제 수료증 발급
- 다.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 라. 현장실습 성과 발표대회 참여 기회 부여

4. 유의 사항

- 가. 현장실습 프로그램 중복 지원 제한(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등)
- 나. 지원한 실습기관에서 불합격할 경우, 타 프로그램 및 기업 지원 가능

V 문의처

-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 02-2287-7176
-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sangmyungintern
- 현장실습·일경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tern.smu.ac.kr/intern/index.do>